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양 산 시 의 회 의 장

2023년 3월 20일

양산시의회규칙 제111호

###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의”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 이상)이”를 “1명 이상)이 그 회의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로, “충원계획”을 “충원계획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4조의 규정”을 “영 제6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의 규정”을 “영 제59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4할”을 “4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를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6조의 규정”을 각각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중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0의 규정”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을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 규정”을 “영 제1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을 “영 제12조”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

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를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은”을 “사람이”로, “있을 때”를 “있을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기근무한”을 “장기 근무한”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1조)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하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3점을 넘지 못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4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1조의4) 중 “임용권자는”을 “의장은”으로, “임용권자가”를 “의장이”로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3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을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5,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15, 별표16의 개정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1항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시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통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차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향료 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향료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향료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향료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형비, 통신설비) 항공공학기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기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 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운할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시)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 업 연 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방재안전연 구	기사(방재)

### 3. 지도사

직렬 \ 계급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 4.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의 부여 기준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0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비고

-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
- 자격증 등급에 따른 총가산점은 0.5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배점(제21조제2항 관련)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점	산 정 방 법
기관 표창	□ 기관표창 (중앙) ▶ 최우수 ▶ 우수 ▶ 장려 (도) ▶ 최우수 ▶ 우수 ▶ 장려	0.5점 0.4점 0.3점 0.3점 0.2점 0.1점	○ 기관표창 적용 대상 - 팀장, 담당자 ○ 해당업무 수행한 기간 비율만큼 인정 - 7급 A가 5개월, 7급 B가 7개월 <A배점: 5개월/12개월 × 가점> <B배점: 7개월/12개월 × 가점>
개인 표창	□ 개인표창 ▶ 훈·포장 ▶ 대통령 ▶ 국무총리 ▶ 공무원대상	0.5점 0.5점 0.5점 0.5점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수상한 자 ○ 공무원대상 -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 공무원 수상자
업무 관련 제안	□ 제안 및 창안 (중앙,도) (시) ▶ 최우수 ▶ 우수 ▶ 장려	0.5점 0.5점 0.4점 0.3점	○ 제안규정에 근거하여 상급기관에서 제안이 채택된 자 ○ 인정방법 - 주제안자는 배점 만점 인정 -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제외
규제 개혁 추진 우수	□ 규제개혁 추진 우수 (중앙) ▶ 최우수 ▶ 우수 ▶ 장려 (도) ▶ 최우수 ▶ 우수 ▶ 장려	0.5점 0.4점 0.3점 0.3점 0.2점 0.1점	○ 상급기관 주관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자 ○ 인정방법 - 주제안자는 배점 만점 인정 -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 인정
각종 대회 수상	□ 상급기관 주관 각종대회 수상 (중앙,도) ▶ 최우수 ▶ 우수 ▶ 장려	0.3점 0.2점 0.1점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 주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자 ○ 인정방법 - 공무원 교육 중 과제발표는 제외

분 야	부여기준(항목)	배 점	산 정 방 법
예산 절감	<input type="checkbox"/>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억원 이상</li> <li>▶ 1억원 ~ 2억원 미만</li> <li>▶ 5천만원 ~ 1억원 미만</li> <li>▶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li> <li>▶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li> </ul>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절감에만 적용</li> <li>○ 인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성과금 심사 결정에 의함 (격려금 제외)</li> <li>-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li> <li>- 보조자 1명은 배점의 2분의 1을 인정</li> </ul> </li> </ul>
통합 성과 관리 우수	<input type="checkbox"/> 통합성과관리 우수 부서장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통합성과관리 우수 부서장</li> <li>○ 인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반영</li> </ul> </li> </ul>
적극 행정 우수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li> <li>▶ 우 수</li> <li>▶ 장 려</li> </ul>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li> <li>▶ 우 수</li> <li>▶ 장 려</li> </ul> (시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li> <li>▶ 우 수</li> <li>▶ 장 려</li> </ul>	1점 0.7점 0.5점  0.5점 0.4점 0.3점  0.3점 0.2점 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li> <li>○ 인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서 통보 건에 한하여 반영</li> <li>- 훈격없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에 준하여 가점 부여</li> </ul> </li> </ul>
저서출판 등 관련분야 실적	<input type="checkbox"/> 저서출판 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서출판자</li> <li>▶ 편저출판자</li> <li>▶ 전문 학술지( 학 회 지 ) 논문게재자</li> <li>▶ 박사학위 소지자</li> </ul>	0.5점 0.3점 0.3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편저출판 및 국내·외 각급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인터넷 포함) 게재 논문만 인정하되 판매목적 저서출판 및 학위논문은 제외</li> <li>- 저서 및 편저는 통상 책으로서 인정될만한 내용·분량 등을 의미하며 편람류 등은 제외</li> <li>- 저서·편저출판 및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중 공저의 경우 3인만 가점을 부여하되, 대표 집필자 1인은 만점을 부여하고 그 외 차등하여 2인까지 배점의 1/2, 3인은 배점의 1/3만 인정. 단, 대표집필자 핵심기여자 등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지정하여 제출</li> <li>- 담당직무 관련분야 연구로 박사학위 소지자</li> <li>- 2개이상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단, 연구직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논문 게재는 가점에서 제외</li> </ul> </li> </ul>

1. 「부여항목(기준)」 별로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산점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일 내용으로 2개 이상의 「부여항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유리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각 「부여항목(기준)」 별 가산점 반영 시기는 가산점 부여 요건과 기준이 충족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성적평정 작성기준일부터 적용하며, 평정이 완료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실적가점의 심사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반영한다.
4.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을 준용한다.